

# 인 천 지 방 법 원

## 판 결

사 건 2014가단259467 손해배상(기)  
원 고 서○○  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 
담당변호사 최유덕  
피 고 남○○  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광  
담당변호사 최규호  
변 론 종 결 2015. 5. 14.  
판 결 선 고 2015. 6. 4.

## 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2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. 8. 8.부터 2015. 6. 4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90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## 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4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. 8. 8.부터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## 이 유

### 1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#### 가. 인정사실

1) 피고는 2013. 8. 8.부터 2014. 7. 9.경까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에서 별지 표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원고를 모욕하였다.

2) 피고는 인천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1,000,000원을 선고받았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1, 2, 4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, 변론 전체의 취지

#### 나. 판단

1)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의 모욕으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이 명백하므로, 피고는 위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위자료를 지급함이 상당한데, 위 모욕의 내용, 행위 태양, 원고와 피고가 서로 모욕한 점,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자료의 액수는 2,000,000원으로 정한다.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. 8. 8.부터 2015. 6. 4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) 이에 대하여 피고는, 원고가 피고에게 한 욕설의 회수와 그 정도가 훨씬 심하며 사건의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의 글 게시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,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

등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## 2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           최성수

별지

순번	일시	내용
1		☆☆아 서○○이하구 교대로 새누리당 혼누린지 똥구녕 빨아주니 좋다 하데? 댜시는 안났나?
2	2013.11.	서○○(노구리)는 정신병자, 아니든 새누리당 알바다
3	2013.2.17.	개지랄 한다, 할망구
4		서○○, 서☆☆?? 너희들도 인간이냐?? 진짜루 개좃같은 년놈이다. 정말 서○○ 서☆☆??
5	2013.8.7.	서☆☆과 교배 이상무
6		여기 탈북자 손들어 보셈.. (생략) 서○○ 말구 또 있나?
7	2013. 9. 25.	서○○, 서☆☆.. 등등.. 개씨발년놈들
8	2014.1.18.	또 중복장사 하려구 하는 부영이 서○○가 정○○ 일당들은 그러지 말고 북한가서 싸우는게 어떨까 싶다. 북한이 좋으면 북한가서 살등가. . 정○○, 서○○, 이○○, 박○○을 북한으로 보냅시다
9		노구리 서○○ 간첩아녀?
10	2014. 1. 14.	조○○, 서○○, 한○○은 칠푼이 똥꼬나 닭구 있어라
11	2013. 8. 22.	그나저나 헐크할망은 고소건 어떻게 됐지?
12	2013. 8.9.	정신병자네.. 헐크~!!
13	2013.10.3.	죽을 때... 금관에 들어가 디져라.
14	2014.7.9.	서○○은 산귀신
15	2014.7.9.	서○○ 아주 악질적 도배하는 놈들이지.
16	2014.10.12.	야동기차니 아침을 깨우네? 밤새 야동 본겨??
17	2014.10.10.	김정은이 똥구멍 굼니?
18	2014.5.16.	그 할망구는.. 대화하든 도배로 끊어~~
19	2013.5.29.	서○○은 할망이라구 했다고 고소했습니다. 개가 웃을 일이죠.. 59세면 당연한 나이 아닌가요?